DR & AJU 입법전략센터
Government Relations Center

2022. 10 Vol. 37



P&B Policy & Business Report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포렌식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Policy & Business Report

P&B Report는 **대한민국 로펌 최초**로 발간하는 **입법 정보 전문지**입니다.
의안 원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국회 회의록 등 국회 공식 자료만을 활용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입법 정보를 매월 제공합니다.

P&B Report
구성 소개



상정 법률안 목록

매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률안 목록을 소관 위원회별로 구분해 보여드립니다.



주요 법률안 소개

매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상정된 법률안 중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을 엄선해 관련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제안자: 법률안 제안 주체(국회의원의 경우 전체 명단과 소속 정당)을 소개합니다.
- 심사진행경과: 법률안 심사 전 과정을 접수,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5단계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 제안이유/주요내용: 제안자가 법률안을 제안한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 주요발언: 국회의원, 전문위원, 정부관계자 및 기타참석자가 국회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해 논의한 공식 회의록에서 유의미한 발언을 발췌해 제공합니다.



법률안 비교·분석

주요 법률안과 유사한 내용의 의원안이 다수 계류된 경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등을 활용해 현행법과 의원안을 비교·분석하여 쟁점별로 타당성과 문제점을 소개합니다.



신규 상정 법률안 목록

매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에 상정된 법률안 가운데 이달에 처음 상정된 법률안을 별도로 소개합니다.



국회 일정표

매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의사일정을 위원회별, 날짜별로 구분해 소개합니다.

Contents

Ⅰ.

정무위원회 특집

06 1. 구성
08 2. 소관법률

Ⅱ.

발의

12 1. 발의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법제사법위원회

19 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20 2)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1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 4) 디지털포렌식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24 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5 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6 7)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27 8)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환경노동위원회

29 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30 1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32 11)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Ⅲ. 소위원회

34 **1. 상정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교육위원회

38 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41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Ⅳ. 상임위원회

46 **1. 상정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정무위원회

54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8 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60 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1 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63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 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68 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70 8)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75 9)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80 10)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Ⅴ. 본회의

84 **1. 본회의 통과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85 1)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0 별첨 **1.용어해설**

2.국회일정표


Policy & Business
Report



Ⅰ.
정무위원회 특집

1. 구성
2. 소관법률

정무위원회 구성

위원정수 24 | 현원 24 | 더불어민주당 14 | 국민의힘 9 | 비교섭단체 1



위원장
백 혜 련

선 거 구 경기 수원시을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재선(20대, 21대)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종민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재선(20대,21대)



위원
강병원
서울 은평구을
재선(20대,21대)



위원
김성주
전북 전주시병
재선(19대,21대)



위원
김한규
제주 제주시을
초선(21대)



위원
민병덕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초선(21대)



위원
박성준
서울 중구성동구을
초선(21대)



위원
박용진
서울 강북구을
재선(20대,21대)



위원
박재호
부산 남구을
재선(20대,21대)



위원
소병철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초선(21대)



위원
오기형
서울 도봉구을
초선(21대)



위원
윤영덕
광주 동구남구갑
초선(21대)



위원
이용우
경기 고양시정
초선(21대)



위원
황운하
대전 중구
초선(21대)

국민의힘



간사
윤한홍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재선(20대,21대)



위원
강민국
경남 진주시을
초선(21대)



위원
김희곤
부산 동래구
초선(21대)



위원
송석준
경기 이천시
재선(20대,21대)



위원
유의동
경기 평택시을
3선(19대, 20대, 21대)



위원
윤상현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4선(18대, 19대, 20대, 21대)



위원
윤주경
비례대표
초선(21대)



위원
윤창현
비례대표
초선(21대)



위원
최승재
비례대표
초선(21대)

무소속



위원
양정숙
비례대표
초선(21대)

소관기관

소관부처현황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소관부처현황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무위원회 소관법률

부 문	번 호	소관법률
국무총리실	1	국제개발협력 기본법(공동소관)
	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공동소관)
	3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5	지속가능발전기본법
	6	청년기본법
	7	행정규제기본법
	8	행정조사기본법
공정거래위원회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6	소비자기본법
	7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0	제조물책임법
	1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1	공인회계사법
	2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3	공적자금상환기금법
	4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 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5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6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7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0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1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12	금융지주회사법
	13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1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15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16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17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18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19	담보부사채신탁법

부 문	번 호	소관법률
금융위원회	2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22	보험업법
	23	상호저축은행법
	2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25	신용보증기금법
	2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7	신용협동조합법
	28	여신전문금융업법
	29	예금자보호법
	30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3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32	은행법
	33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34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35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3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7	자산유동화에관한 법률
	3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39	전자금융거래법
	40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4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42	중소기업은행법
	4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4	한국산업은행법
	45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4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47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1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2	공익신고자보호법
	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4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6	행정심판법
국가보훈처	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국가보훈 기본법
	4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7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8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9	독립기념관법
	10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11	보훈기금법
	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13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부 문	번 호	소관법률
국가보훈처	1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1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개인정보 보호법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위원회	1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Policy & Business Report



II.
발의

1. 발의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발의 법률안 목록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국회운영위원회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1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마약류 등의 중독증 제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7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8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
		9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법률안 :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일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에 상정된 심의대상 안건 법률안
○ : 주요 법률안 소개에 해당하는 법률안 ● : 법률안 비교·분석에 해당하는 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정무위원회	O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O	1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O	1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기획재정위원회		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교육위원회		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7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8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2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13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O	3	디지털포렌식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8	위장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9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O	1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1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발의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1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외교통일위원회		1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북한 핵무력 법제화 규탄 및 비핵화 대화 수용 촉구 결의안
		6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여권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국방위원회		1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3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1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	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여수 · 순천 10 · 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9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
		31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33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행정안전위원회		3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3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3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38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국가유산기본법안
		4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5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6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15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	1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8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
		20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안
		5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6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8	민간해양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9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18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3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4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5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6	해상교통안전법안
		27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28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9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3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4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8	산업단지 노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	10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6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7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8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19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O	5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7	미용사법안
		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보건복지위원회		1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노후준비 지원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환경노동위원회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O	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O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O	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수자원의 조사 ·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7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18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19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O	5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7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9	도심융합특구 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10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통한 지방 역세권 등 개발지원과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11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O	12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1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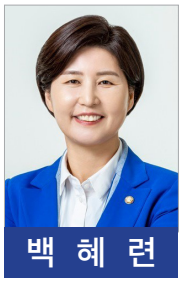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국토교통위원회		1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보위원회			발의 법률안 없음
여성가족위원회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성별영향평가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1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7764호



백 혜 련

선 거 구	경기 수원시을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재선(20대, 21대)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2.10.11.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물적 분할은 회사의 특정 사업부를 분사(分社)하여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되 이를 분할회사의 100% 자(子)회사로 만드는 형태의 분할임.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상장회사의 분할 공시와 기업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물적 분할은 전체 상장회사 분할의 78%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2015년 대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런데 신설된 자회사가 상장되면서 기존 모(母)회사의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였고, 주가 하락의 손실을 모(母)회사의 소액주주들이 고스란히 떠안는 일이 반복되면서 물적 분할이 사회문제로 떠오름.

한편, 현행법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사항이 결의된 경우,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자기소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음.

이에 물적 분할의 경우에도 기존 회사의 주주들에게 자신의 주식을 회사가 매입하도록 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여 모(母)회사의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도록 함으로써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증권시장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30조의12).

2

정무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7424호



박 재 호

선 거 구	부산 남구을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재선(20대, 21대)
소속위원회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2.09.20.	제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자금융거래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등의 안전성 확보의무,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지난해 머지포인트 사태로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보호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회사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보호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금융회사등의 이사회의 금융보안 관련 책무를 명확히 하고, 전자금융업무 및 정보자산의 보안 등을 총괄하는 금융보안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며, 이용자 예탁금 보호를 위한 별도관리 및 이용자 우선변제권을 도입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 이용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금융보안을 총괄하여 책임질 금융보안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금융보안책임자는 금융보안의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금융위원회에 매년 제출하도록 함(안 제21조의2).

나. 금융회사등의 이사회가 금융보안 체계, 전자금융업무의 지속성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여 이사회의 금융보안 관련 책무를 명확히 함(안 제21조의7 신설).

다.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전자지급거래와 관련하여 받은 금전을 은행 등에 별도 관리하도록 하고, 해당 금전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이용자 등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그 청구권에 관한 금액을 변제받을 권리를 보장함(안 제21조의8 신설).

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금융플랫폼을 운영하는 자 등에게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그 자가 그 업무에 관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특례를 둠(안 제27조의2 신설).

3

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7419호



이 학 영

선 거 구	경기 군포시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 횟수	3선(19대, 20대, 21대)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2.09.20.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공 건설공사 부문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주자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은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구축·이용하고, 임금을 구분 지급함으로써 하도급거래의 불공정 관행이나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상당히 개선되었음.

그런데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보듯이 민간 부문의 하도급거래에서는 임금이나 자재대금 체불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하도급거래에서 공공 건설공사에서와 같이 발주자로 하여금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구축, 전용계좌 개설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 각 이해당사자들이 하도급대금의 지급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임금 체불 등을 방지하고 적기지급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등).

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포렌식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조수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7436호



조 수 진

선 거 구	비례대표
정 당	국민의힘
당선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2.09.20.	제안

제안이유

"디지털포렌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휴대전화나 컴퓨터 또는 이동식 저장매체를 분석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형사사건의 수사와 재판에 이용되게 하는 '기법'으로 인식되고 있음.

IOT(사물인터넷), ICT(정보통신기술) 등의 다양한 발전과 함께 디지털포렌식은 이러한 형사사건의 절차 중 하나의 기법을 넘어 민사소송, 재난 · 재해 원인 분석, 기업보안 서비스 등 점차 그 영역이 넓어지고 있음.

민간 영역에서도 디지털포렌식 기술 개발과 연구, 보급에 뛰어들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디지털포렌식이 미래산업 · 일자리 유망주로 떠오르고 있음.

그러나, 아직 국가 차원에서 이를 하나의 독립적인 산업으로 인식함이 부족하여 신기술 연구, 개발의 육성 및 지원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디지털포렌식을 하나의 미래산업으로 규정하고, 국가가 육성 및 지원 정책에 앞장설 수 있도록 법률안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디지털포렌식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디지털포렌식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디지털포렌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의 안전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디지털포렌식산업 육성 추진 체계(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포렌식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디지털포렌식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 · 시행하도록 하고,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그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2) 디지털포렌식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디지털포렌식산업 육성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포렌식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디지털포렌식 기술의 연구 · 개발, 기관 간 기술협력 및 인력 · 정보 등의 교류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8조).

다. 디지털포렌식사업자 지원 등(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1) 디지털포렌식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은 디지털포렌식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포렌식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그 위반사유가 중대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포렌식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재정지원,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국유재산 · 공유재산의 대부 · 사용, 창업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라. 디지털포렌식산업 기반조성(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포렌식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내외 표준의 조사 · 연구 · 개발 등 표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포렌식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원 등 전문인력의 양성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포렌식산업의 육성 정책의 수립 · 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디지털포렌식산업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19조).

5

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7770호



허 종 식

선 거 구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2.10.11.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유형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공유서비스 이용 종료 후 공중이 통행하는 도로, 횡단보도, 보도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하여 통행상 불편을 야기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안전상의 문제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로, 횡단보도, 보도 등 공중이 통행하는 공간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하는 경우, 이를 불법 주정차로 간주하여 강제로 견인하고, 견인에 따른 비용을 개인이나 공유서비스 기업에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자체 조례 제·개정을 통해 마련하고자 노력 중임.

하지만 각 지자체별로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하는 방법을 정하는 기준이 상이하고,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견인료 청구 근거를 법령이 아닌 자치법규에 규정하고 있어 일선 행정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로 및 그 밖의 공공장소에 무단방치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이 이를 견인하고, 견인에 따른 비용을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서비스 기업 등에 청구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에 의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36조의2 신설).

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7402호



성 일 종

선 거 구	충남 서산시태안군
정 당	국민의힘
당선횟수	재선(20대, 21대)
소속위원회	국방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2.09.19.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화 '기생충' 의 아카데미상 수상 및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의 에미상 수상 등 우리나라 영상콘텐츠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며, 우리나라 영화 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글로벌 문화 콘텐츠 산업을 선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 현행법은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를 두어 저작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위하여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저작물 복제, 배포, 방송, 전송 등의 권리를 포함하여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를 모두 양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영상제작사 등에 비해 창작자인 저작자의 협상력이나 정보가 부족함을 고려하였을 때 영상저작물에 있어서 저작권 계약은 계약 당사자 사이의 불평등한 관계에서 체결되고 있으며, 창작자들은 영상저작물 이용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창작자들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는 것이 현실임.

최근 유럽은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 시장 저작권 지침」을 마련하여 글로벌 디지털 환경에서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이 언론간행물 등을 재사용하여 획득한 수익에 대한 대가를 저작자에게 분배하는 규정을 마련한 바 있으며, 남미 등 여러 해외 국가에서도 이미 영상물 이용에 따라 영상저작물 저작자에게 일정 부분 대가가 지급되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이에 영상저작물 저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보상권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저작자의 권리 보호 및 창작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조, 안 제100조의2 신설 등).

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7769호



정 일 영

선 거 구	인천 연수구을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2.10.11. 제안

제안이유

희소금속은 미래차, 반도체 등 산업고도화에 필수적인 핵심소재로 신산업 성장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희소금속은 중국, 호주,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일부국가에 매장 · 생산이 집중되어 있으며, 이 같은 자원보유국의 정책변화에 따른 수출제한조치 등으로 인해 공급 및 가격 불안, 그리고 무역분쟁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임.

이에 세계 각국은 희소금속을 산업경쟁력을 넘어 국가안보 차원으로 접근해 과도한 수입의존 공급망을 재편하는 등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자국내 산업기반 확보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희소금속 소재산업 발전 종합대책 수립, 2011년 희소금속 산업 생태계 조성 계획 수립 등의 노력을 통해 수급안정화 기틀을 마련하고, 민간투자 활성화, 핵심기술 개발 및 체계적인 산업육성 기반 구축 성과를 얻었으나, 타 국가에 비해 희소금속 산업 육성 · 육성 관리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5년마다 안정적인 공급망 계획과 희소금속 전문기업 경재력 강화 방안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 · 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시해 우리나라 희소금속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 신설).

8

보건복지위원회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7751호



강 기 윤

선 거 구	경남 창원시성산구
정 당	국민의힘
당선횟수	재선(19대, 21대)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2.10.07. 제안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와 함께 공급자 · 치료 중심에서 환자 · 예방 중심으로 의료서비스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음. 보건의료 분야에서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디지털 헬스케어(Digital Healthcare)의 활성화를 통해 보건의료 철의 삼각(Iron Triangle for Healthcare)을 극복하고 미래 첨단의료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2021년 보건산업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의료인의 71.8%가 디지털 헬스케어 필요성에 공감하는 등 디지털 헬스케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보건의료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임.

또한 우리나라는 '25년 초고령사회 진입과 더불어 노인 인구가 천만 명을 넘을 것을 예상되는 등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 안전 달성, 의료서비스 질 제고, 국민 건강관리 등을 위해 의료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보건의료 체계를 효율화하고 급격한 의료비 지출 증가를 완화해야 함.

한편 우리나라는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시스템의 보급률은 90%가 넘고 전국민 건강보험을 기반으로 하는 보건의료 체계의 특성으로 인해, 잠재가치가 높은 방대한 보건의료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음. 이를 우리나라의 뛰어난 ICT 역량과 결합한다면 보건의료서비스의 혁신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의약품 등 디지털 · 바이오헬스 산업 전반의 혁신과 성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이미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핀란드 등 주요 선진국은 국가 차원의 '디지털 헬스 혁신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한 바 있으며, 기존 보건의료 관계 법률과 별개로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공유 · 활용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개인 맞춤형 의료 개념인 정밀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별도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과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 전체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종합정책을 수립하는 등 디지털 기반 보건의료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디지털 · 바이오헬스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 지원하고자 함. 또한, 보건의료데이터 공유 · 활용에 대한 전주기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보건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해 미래 첨단의료 발전환경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으로써 코로나19, 고령화 등 사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환자 안전 달성,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 실현 등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며, '제2의 반도체 산업'이라 불리는 디지털 · 바이오헬스 산업을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주요내용

가. “디지털 헬스케어”를 지능정보기술과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하여 질병의 예방 · 진단 · 치료 및 건강관리 등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일련의 활동과 수단으로, “보건의료데이터”를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에 따른 보건의료정보로써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는 등 보건의료 중심으로 디지털 헬스케어의 개념을 정립하고, 「의료법」, 「약사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등 보건의료 분야 유관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2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 기반 조성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민 · 관이 협업하여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에 디지털헬스케어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다. 연구적 목적 등의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데이터 3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지침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던 보건의료데이터의 가명처리 관련 범위 · 방법 · 절차 등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함께 보건의료 분야 빅데이터 연구를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라. 국민이 의료 · 건강관리서비스뿐만 아니라 돌봄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자신에 대한 개인 의료데이터를 자기 주도적으로 공유 ·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전송요구권을 도입하고, 개인 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마. 새로운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 · 서비스 · 기술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보건의료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국민의 생명 · 건강과 직결되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디지털 헬스케어 특화 규제샌드박스 제도 신설(안 제9조,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

바. 정부가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표준 · 품질관리, 연구개발 촉진, 인력 양성, 실태조사, 국제협력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제29조부터 제35조까지).

9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7386호



노 웅 래

선 거 구	서울 마포구갑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 횟수	4선(17대, 19대, 20대, 21대)
소속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2.09.16.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형적이고 전통적인 직접고용관계를 전제로 근로자의 단결권 ·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해 왔음. 근로계약의 당사자만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의 상대방으로서 사용자로 인정하는 것이 대표적임.

그러나 현행법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도급 · 위탁 · 파견 등 간접고용 영역의 근로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최근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임금교섭 및 파업 사례가 대표적으로, 이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 · 지배력을 가지는 자 간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간접고용 근로자는 여전히 근로계약의 당사자만을 교섭 대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임.

한편,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민 · 형사상 책임에서 면책됨. 그러나 그 범위가 협소하여 실제로는 쟁의행위가 종료된 이후 과도한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와 압류 · 가압류 신청으로 노동조합의 존속과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는 실정임.

그러므로 노동조합의 교섭 대상인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노동조합 및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여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과 실질적인 교섭력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및 제3조의2 등).

10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7601호



우 원 식

선 거 구	서울 노원구을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 횟수	4선(17대, 19대, 20대, 21대)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2.09.28. 제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상황에 대한 각종 자료들(이하 '안전보건자료'라 함)이 해당 사업주, 고용노동부 등에 의해 작성 · 보관되고 있고, 일부 자료는 사업주가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되고 있음. 이러한 안전보건자료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대상 사업장 전 · 현직 노동자들의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로 인해 그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첫째, 현행법상 안전보건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보관 · 관리되지 못하고 있음. 관련 규정이 고용노동부와 그 산하 기관들의 내부 규칙에 따라 제각각으로 정해져 있고, 보관 기간도 3년~10년으로 짧음.

둘째, 노동자들이 관련 사업장의 안전보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일부 자료(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등)는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 알려주도록 하였지만 그 범위가 제한적이고, 사업주가 관련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퇴직한 노동자 · 협력업체 노동자 등에게는 알려줄 의무가 없음. 전 · 현직 노동자들이 산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등에 제출되는 안전보건자료 등 일부 자료에 대해 고용노동부 등을 상대로 고용노동부 등에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동 법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비공개 범위가 넓고(어떤 자료는 일반 국민에게는 공개가 제한되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전 · 현직 노동자들에게는 공개될 필요가 있음), 현실적으로 사업주의 영업비밀 주장이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음.

셋째, 현행 산안법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할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제5조제1항제3호), 그 정보가 무엇이며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 그러한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했을 때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등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어, 아무런 실효성이 없음.

따라서 ① 우선 법률에 '안전보건자료'에 대한 목록을 만들고, ② 대상 자료에 대한 통합적 · 장기적 관리 · 보관 체계를 마련하며, ③ 노동자들에게 그 자료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④ 개별 노동자들이 그 자료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함..

주요내용

가. 안전보건자료의 목록을 제시하며, 고용노동부에게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장기 보관 · 관리 의무를 부여함(안 제28조의2).

나. 전 · 현직 노동자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보건자료 공개 의무를 명시하고(안 제28조의3), 정당한 이유 없는 비공개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둠(안 제175조제2호의2).

다. 누구든지 자신이 근무했던 사업장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전산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안전보건 자료에 대해서는 공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4). 다만 안전보건자료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안 제28조의5)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함(안 제170조제1호의2).

11

국토교통위원회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7738호



김 병 욱

선 거 구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재선(20대, 21대)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2.10.04.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인중개사법은 회원의 자질향상과 품위유지, 중개업에 관한 제도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과 협회 회원 가입에 관한 사항이 임의규정이고 협회가 회원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도·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사기나 부정한 방법 등 무질서한 중개행위로 인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어려움이 다수 발생하여 내부의 정화작용이 힘든 상황임.

또한, 갈수록 중개업무가 복잡다단해지고 있어 법령으로는 시의적절하게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어, 신속·정확한 단속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윤리인식 제고를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화 및 회원 의무가입과 지도·관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현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부동산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인 실거래신고 의무를 다하고 있고, 교육위탁사업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공제사업을 하는 등 이미 공익 목적을 위한 법정단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이에 법정단체 및 의무가입을 강제하고 있는 타 전문자격사 제도와 형평성을 고려하고, 공인중개사의 품위 향상과 부동산중개산업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회의 임의설립 규정을 법정단체 규정으로 개정하여, 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는 경우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명시하고자 함.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을 정하고, 협회의 윤리규정 제정과 회원에 대한 지도·감독규정을 신설하여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41조,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1조의4, 제41조의5, 제41조의6, 제45조 등).

Policy & Business Report



III. 소위원회

1. 상정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상정 법률안 목록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법제사법위원회		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교육위원회		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교육정보화기본법안
		5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8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6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7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8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9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국방위원회		1	5 · 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	6 · 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7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11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3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1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법률안 :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일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에 상정된 심의대상 안건 법률안
○ : 주요 법률안 소개에 해당하는 법률안 ● : 법률안 비교·분석에 해당하는 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국방위원회		16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 보상특별법안
		19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20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1	119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5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23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1	귀농어 ·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4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5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7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9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1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3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	9	스마트제조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O	1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 · 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에 관한 법률안
		1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청년 지원을 위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19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국토교통위원회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
		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5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6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1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5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국토교통위원회		24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여성가족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1

교육위원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0475호



김 윤 덕

선 거 구	전북 전주시갑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재선(19대, 21대)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0.06.15.	제안
상임위원회	2020.08.2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소위원회	2020.09.15.	상정
	2020.09.16.	상정
	2022.09.16.	상정
		축조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신규 채용을 함에 있어 일정 비율 이상을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출신(지역인재)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대학과 지역인재를 육성·지원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할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채용이 권고사항이라는 이유로 지역인재 채용을 소홀히 하는 등 당초 법안의 제정 취지인 지역인재 육성에 미흡한 실정임. 실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증가 추세에 있으나, 개별 기관별로 살펴보면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권고기준에 미달하거나 극히 미미한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함. 또한 기업의 경우 지역인재 채용은 일부 대기업 등에서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일정비율을 규정하고, 그 실적을 공개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대통령령에 규정된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비율 기준 40%를 법률에 의무사항으로 직접 규정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도 신규 채용인원 비율 기준 40%를 법률에 권고사항으로 직접 규정함으로써 지역인재의 취업기회를 제고하는 등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육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참고자료

<공공기관 유형별 지역인재 채용비율 현황>

(단위: 개, 명, %)

구분	기관수	채용인원	지역인재	비율	35%준수 기관(비율)	40%준수 기관(비율)
공기업/준정부기관	135	20,490	12,148	59.28	87.40	78.51
기타공공기관	227	12,856	7,568	58.86	39.64	34.36
계	362	33,346	19,716	59.12	57.45	50.82

자료: 교육부

주요발언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 국회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채수근
김윤덕 의원안은 국가의 지원을 위한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40% 이상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40% 이상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고,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40% 이상 지역인재 채용을 노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윤덕 의원안은 정부가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결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 유기홍 의원안은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실적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평가지표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무적으로는 평가지표에 반영이 되고 있지만 법에 명확히 규정을 한다면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두 개정안은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특수인력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덕 의원안은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 인원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유기홍 의원안은 채용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해서 채용 실적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윤덕 의원안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신규채용 인원 중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는 경우에 정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해당 기업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이유를 공개하는 것이 투명성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 교육부지역혁신대학지원과장 박성하
지역혁신대학지원과장 박성하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두 가지 파트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 비율에 대해서 매년 점검을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등은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갖고 있는 계획이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이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우선 의무화하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에 있습니다.

■ 서동용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법 시행된 지가 언제부터인데요. 지금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2019년도 자료가 저한테도 있는데요. 민간기업도 권고 대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조사도 안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 교육부지역혁신대학지원과장 박성하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하고는 있는데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

■ 강민정 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 교육의 문제뿐 아니라 이게 사실 지방소멸 문제 자체가 국가적인 과제이고 교육을 살리면 지방소멸을 어느 정도 대처하고 예방할 수 있거나 부분적으로라도 해소할 수 있다라는 건 너무 상식적인 얘기이고 법안까지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부는 이 부분에 관해서 그냥 전수조사해서 현황을 파악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걸 계속 추적관리하면서 분석하고 이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교육부 내에서 정책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서 실행해야 될 것인지 이런 식으로 저는 사실 관리가 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니까 너무……

■ 교육부차관 장상윤



저희가 좀 관리 노력을 강화를 하도록 하고요. 현행 규정상으로 보면 채용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하고 기업의 채용실적을 공개하도록 요청을 하고 또 그게 미진할 때 더 채용을 해라라고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은 있는데 사실은 요청을 하려면 실적 자체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가 확보를 하고 파악을 해야 되는데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하니까 관리가 되지만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 소위원장 김영호



아까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고용을 한 60% 한다는 통계 자료는 있는 건가요, 그게?

■ 교육부차관 장상윤



예.

■ 소위원장 김영호



60%요?

■ 교육부지역혁신대학지원과장 박성하

예, 구체적으로 자료를 말씀을 드리면 2021년 기준으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을 총 합산하여 369개의 기관이 있고 2만 6998명을 신규채용을 한 중에 지역인재로 1만 6212명을 채용을 해서 총 60%를 지역인재로 신규채용을 완료하였습니다.

■ 소위원장 김영호



의미 있는 통계네요.

■ 권은희 위원



얘기가 나온 김에 좀 정확하게 짚어 보자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금 교육부에서 직접 해당 기업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방……

■ 교육부차관 장상윤



일단 300인 이상 기업 리스트가 있어야 됩니다.

■ 권은희 위원



그러니까 지방대학을 통해서 지방대학 졸업생이나 학생 중에……

■ 교육부차관 장상윤



취업처를 확인해 가지고……

■ 권은희 위원



해당 지역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업에 취업한 학생 수를 학교를 통해서 조사하는 방법이 교육부에서는 현실적으로 전수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렇지 않고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협조를 얻어서 그쪽하고 공동으로 진행하는 방식이지요?

■ 교육부차관 장상윤



맞습니다.

■ 권은희 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학교를 통해서 하실 생각인가요, 아니면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업무 협의를 통해서 공동으로 진행하실 생각이신가요?

■ 교육부차관 장상윤



인력 채용에 대해서는 사실 기업한테 자료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근거법이 확실하게 있으면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대학을 통해서 확보하는 게 훨씬 더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서동용 위원



앞에서도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하여튼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게 또 얼마나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고 하는 그 지적에는 공감이 돼요. 그런데 오죽했으면 이런 법률을, 심지어 50%까지 이렇게 계속 의원들이 발의를 반복해서 하는 것은 지역소멸의 위험에 대한 위기감들이 워낙 커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법에 나와 있는 300인 이상에 지역인재 채용 권고를 한다고 해 놓았는데 그걸 교육부 법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지금까지 파악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정말 이걸 의무화해서라도 뭔가 조금 움직이도록 하지 않으면 교육부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불신이 있는 것이거든요. 지방대학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발 좀 체계적이고 종합적 계획들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맨날 같은 이야기 반복하는데요. '잘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도 국정과제로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 정도 이야기만 계속 반복하고 계세요.

■ 교육부차관 장상윤



알겠습니다.

■ 서동용 위원



차관님, 여튼 여러 가지 업무 많으시겠지만 이거 나라 망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4849호



엄 태 영

선 거 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정 당	국민의힘
당선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0.11.02.	제안
상임위원회	2021.02.2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소위원회	2022.09.05.	상정
	2022.09.20.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재생에너지 연료 의무혼합제도(Renewable Fuel Standard)'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정유사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송용 연료에 일정비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의무적으로 혼합하도록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정부와 정유사와의 자발적 협약을 통해 경유에 바이오디젤 0.5%를 혼합하도록 하면서 도입하였고, 2015년부터 2.5%로 의무화하여 2018년부터는 3%로 그 비율을 상향하였음.

최근 중국 등 역내 정제시설이 급증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수송용 연료의 수요가 급감하는 등 시장 상황이 갈수록 급변하고 있으나, 현재 의무혼합량 산정 시 직전연도의 내수판매량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산정된 의무혼합량을 준수하는 데 있어 현장의 애로가 날로 커지고 있음.

이에 의무혼합 이행 시 초과분의 일부를 예치하거나, 부족분의 일부를 유예하도록 하여 제도를 유연하게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법 시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내 석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3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참고자료

[표 1]「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시행령」

신 · 재생에너지 연료의 혼합량 산정 계산식(제26조의2 관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송용 연료에 혼합하여야 하는 신 · 재생에너지 연료의 연도별 의무혼합량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연도별 의무혼합량 = (연도별 혼합의무비율) × [수송용 연료(혼합된 신 · 재생에너지 연료를 포함한다)의 내수판매량]

비고

1. 연도별 혼합의무비율은 다음과 같다.

해당 연도	수송용 연료에 대한 신 · 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비율
2015년	0.025
2016년	0.025
2017년	0.025
2018년	0.03
2019년	0.03
2020년 이후	0.03

※ 연도별 혼합의무비율은 신 ·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수준, 연료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15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 재검토한다. 다만, 신 · 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의 이행실적과 국내외 시장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수송용 연료의 종류: 자동차용 경유**

3. **신 · 재생에너지 연료의 종류: 바이오디젤**

4. 내수판매량은 다음과 같다.

가. **혼합의무자가 석유수출입업자이거나 해당 연도 초일을 기준으로 사업을 개시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연도의 내수판매량**

나. **가목 외의 경우: 해당 연도의 직전 연도 내수판매량**

5. 그 밖에 신 · 재생에너지 연료의 혼합량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표 2] 혼합의무제 예치·유예 관련 주요국 사례

구 분	미 국	영 국	일 본
예 치	20% 이내	25% 이내	예치 허용
유 예	한도 없음	-	20% 이내

주) 미국과 영국은 인증서 거래를 통해, 일본은 인증서 거래 없이 예치 · 유예를 허용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표 3] 시행령 개정령안의 연도별 혼합의무비율

연도	현재 ('18년~)	'21.7월~'23년 (2.5년)	'24~'26년	'27~'29년	'30년~
혼합의무 비율	3%	3.5%	4.0%	4.5%	5%

주요발언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상헌

먼저 엄태영 의원안은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혼합의무 이행량이 초과된 경우 초과분의 일부를 예치하거나 이행량이 부족한 경우 부족분의 일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의무혼합 초과분 예치제도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고 또 의무혼합량 부족분 유예제도는 시장 불확실성에 보다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혼합의무제도 도입 이후 혼합의무자들의 혼합의무비율 미이행 사례가 없었고 의무이행량 이상의 바이오디젤을 구입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바이오디젤 판매량이 현행보다 감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바이오에너지협회는 대기업인 일부 정유사가 바이오디젤 산업에 진출하는 등 환경변화를 이유로 예치·유예제도 도입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김한정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박일준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5년 7월부터 혼합의무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그 이후에 아직까지 의무 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과징금을 내거나 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게 2020년도에 법안이 발의될 때 정유사들이 여러 가지 경영상의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를 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영업이익이 좀 많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결정적으로는 이 비율을 하게 되면, 바이오디젤 업계가 중소기업들인데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혹시 이런 식으로 유예를 해 주거나 했을 때 판매량 감소나 이런 데 대한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 자체는 논리적으로는 초과분을 하게 되면 나중에 예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하면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유연성을 두자 하는 그런 부분인데 바이오디젤 업계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업계하고도 충분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는 정부에서는 동의가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 김회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늦게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소위원장 김한정



예.

■ 김회재 위원



정부에서 처음에는 이 개정 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다가 반대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박일준



처음부터 동의라기보다 실무적으로는, 이게 논리적으로는 조금 더 많으면 남겨 놓고 부족하면 다음에 하고 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저희가 볼 때 아직 바이오디젤 업계 부분도 정리가 좀 덜 됐고 조금 더 시간적으로,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다른 대안에 대한 모색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김회재 위원



정부 의견란을 보니까 '정유사들이 유가급등에 따른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야 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은 수시로 변하는 것이고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인 그 상황을 위해서 있는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박일준



예, 맞습니다.

■ 김회재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부동의하는 데 큰 이유가 된다고 하는 것은 선뜻 납득이 좀 되지 않습니다. 길게 보고 이 법이 필요한지를 검토를 해 주셔야지 지금 당장 유가급등으로 이익 보고 있으니까 이렇다면, 그다음에 곧 떨어지면 그때는 또 이 법을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박일준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맞으시고, 단지 이게 정부가 부동의하는 결정적인 원인은 아니고요. 이 법이 언제, 왜 발의가 됐는지를 알아보니 정유사들이 적자가 좀 심했을 때 이렇게 조정을 어느 정도 하게 되면 1년에 한 70억 정도의 정유사들이 플러스가 된다는 그런 배경하에……

■ 김회재 위원



검토자료에 보면 그게 가장 큰 이유로 돼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부동의 안에 보면. '유연제 제도화 필요성 낮음' 하고 가장 큰 이유가 그거고요. 바이오디젤 업계에서 반대하는 부분은 부수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업계의 반대하고 이걸 떠나서 전반적으로 이걸 어떻게 끌고 갈 건지에 대한 큰 틀에서 이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이유 하나 때문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불안해 보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신중히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박일준



예, 알겠습니다.

■ 소위원장 김한정



계속해서……

■ 구자근 위원



위원장님, 저도 이 건에 대해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 소위원장 김한정



예,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어차피 이것은 지금 이견이 있기 때문에 계속 심사할 수는 없습니다.

뒤늦게 온 위원님들께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앞으로 12시 조금 넘어서까지밖에 심사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구자근 위원



차관님, 지난 정부 20년 12월에 있었던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에 보면 지금 연료혼합 의무화제도에 관련해서 예치·유예 등 유연성 부여를 위한 제도개선을 병행한다고 이 내용이 돼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시지요? 입장 변화가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무슨 표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박일준



바이오디젤 업계에서 최근에 여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다시 제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큰 피해가 없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효과적인 대안이 있는지 이런 데 대한 검토가 **조금 필요합니다.**

■ 구자근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바이오중유 가격이 얼마지요? 18년에 896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1837원입니다. 18년 대비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법안 취지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지금 이 시장가격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충격이나 혼선이 얼마나 될지 그 부분도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박일준



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구자근 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Policy & Business Report



Ⅳ. 상임위원회

1. 상정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상정 법률안 목록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국회운영위원회		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국민입법청구법안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국회미래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국회에서의 증언 ·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8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7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수산업 ·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9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3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3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법률안 :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일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에 상정된 심의대상 안건 법률안
○ : 주요 법률안 소개에 해당하는 법률안 ● : 법률안 비교·분석에 해당하는 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법제사법위원회		33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1	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	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6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O	1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디지털자산거래법안
		18	병역의무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19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8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	3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33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O	3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5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1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3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O	3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	39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0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4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2	청년 자산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법안
		43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5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정무위원회		47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48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9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50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교육위원회		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5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국방위원회		1	5 · 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	6 · 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8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9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4	군용비행장 ·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6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17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9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22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
		2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4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28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9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30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1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32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3	함정의 운항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1	119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행정안전위원회		2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5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20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안
	O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7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8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메타버스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
		10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3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	20	이벤트산업 발전법안
		21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종주국 김치, 인삼, 태권도의 세계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25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7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	수산업 ·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7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O	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5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송 · 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O	21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청년 지원을 위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6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환경노동위원회		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O	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8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환경노동위원회		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3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17	소음 · 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영산강 ·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2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8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9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3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4	파독 광부 · 간호사 ·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5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3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38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5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1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6	노후계획도시 활성화 및 재생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17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
		1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지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안
		20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국토교통위원회		2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진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6	동 · 서 ·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7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8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2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0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	33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3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7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3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40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41	장애인 ·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	4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3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44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5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4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47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9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0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5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3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5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여성가족위원회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5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6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7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여성가족위원회		10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11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 ·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
		19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1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4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2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

정무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6155호



우 원 식

선 거 구	서울 노원구을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4선(17대, 19대, 20대, 21대)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2.06.27.	제안
상임위원회	2022.09.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예상매출액에 관한 정보를 과장하여 제공하여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음

최근에도 디저트 프랜차이즈 Y가 연간 매출액 상위권에 속하는 가맹점을 기준으로 30%에서 90%를 부풀린 예상매출액을 제공하고 예상매출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거짓으로 기재하면서 10% 더 부풀려진 매출액을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하기도 함.

가맹희망자들은 예상매출액 정보를 토대로 가맹점 창업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과장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을 맺은 가맹점주들은 기대수익과 투자금액보다 낮은 매출로 가게 운영에 상당한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

공정위는 위 가맹본사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가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여하기도 했음. 하지만 공정위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에도 불구하고 신고자 외의 피해를 입은 다수 가맹점주들은 위 피해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여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가맹본사가 허위·과장 정보 제공 등으로 공정위 처분을 받은 경우 그 구체적 사유를 가맹점주들에게 알리고, 가맹본사에게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허위·과장정보로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의2 신설).

참고자료

<가맹종합지원센터 개요>

- 개소 : 2021년 3월 29일
- 업무수행 : 공정거래조정원
- 주요 업무

▷ 분쟁의 발생-해결-예방에 맞춰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가맹희망자의 **고충을 해결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

- 분쟁 중인 가맹점사업자에게 **분쟁조정, 민사소송 등 분쟁해결을 위한 방안 안내**
- 영세 가맹점사업자 **소송대리 지원 및 소장 작성 지원** 등
- 가맹점사업자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예방 교육
- 법위반 가맹본부 불공정거래행위 재발방지 교육 등

<실제 부과된 공표명령 또는 통지명령 사례>

① 홈플러스(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2016가맹2552, 의결 제2018-039호)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의 행위를 함으로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1> 기재 문안대로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 현재 자신과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통지

저희 홈플러스 주식회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음과 같이 시정명령(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17- 호, 2017. . .)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과는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실제보다 점포 전용면적을 축소하여 반영함으로써 예상매출액의 범위 등을 부풀렸음에도 동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산정된 것처럼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년 월 일

홈플러스(주) 대표이사 김상현 (인)

② (주)비에이치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2019가조1126, 의결 제2021-171호)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1.항 내지 3.항의 행위를 함으로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1> 기재 문안대로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 현재 자신과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전자적인 방법으로 통지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1>

통지 문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통지

저희 주식회사 비에이치씨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 다 음 -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와의 충분한 협의 혹은 동의 없이 수수료 부담이 있는 E쿠폰 취급을 강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은 울산옥동점, 화성화산점, 천단산월점, 영주행복점, 대구신암점, 성덕점 및 춘천온의점 가맹점사업자에게 한 것과 같이 가맹계약해지 통지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입증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 등의 이유로 가맹계약기간 중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심인은 울산옥동점, 화성화산점, 천단산월점, 영주행복점, 대구신암점, 성덕점 및 춘천온의점 가맹점사업자에게 한 것과 같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021년 월 일

주식회사 비에이치씨 대표이사 임금옥 (인)

- 28 -

③ (주)아로마글로브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2021가조1247, 의결 제2022-022호)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1.항 내지 2.항의 행위를 함으로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3> 기재 문안대로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 현재 자신과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전자적인 방법을 포함)으로 통지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3>

서면통지문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통지

저희 주식회사 아로바글로바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음과 같이 시정명령(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22-022호, 2022. 3. 10 .)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피심인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가맹계약 즉시해지 사유보다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고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2년 월 일

주식회사 아로마글로바
대표이사 ㅇㅇㅇ (인)

2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6143호



양 정 숙

선 거 구	비례대표
정 당	무소속
당선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2.06.24.	제안
상임위원회	2022.09.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원하는 경우 개인정보 관리체계 및 안전성 확보조치 등의 법률 부합 여부를 인증해 주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해킹과 같은 사이버 공격의 급증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과 같이 대량의 개인정보를 장기간 보유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인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처리자 중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연간 매출액·이용자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자 등은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등).

참고자료

< ISMS와 ISMS-P 비교 >

구분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
인증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
법적 근거	「정보통신망법」 제47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
목적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인증 의무	O	X
인증 기준	관리체계수립 및 운영 등 16개 항목 + 보호대책 요구사항 64개 항목	ISMS 인증기준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22개 항목
심사 내용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 수립·운영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조치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부합하는지 등
관리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증 마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ISMS-P Personal Information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정보통신망법」과 개정안의 인증 의무대상자비교 >

구분	ISMS 인증 의무대상자(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제1호	▸**기간통신사업자** ※ (예) 인터넷 접속·전화서비스, 이동통신 등	▸**제1호 ~ 제3호 : 동일** ▸**제4호 추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보유하는 자
제2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 (예) 서버·스토리지 호스팅, 네트워크 서비스 등	
제3호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 1,500억원 이상 ※ (예) 상급병원, 재학생 수가 1만명 이상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100억원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수** 1백만명 이상 ※ (예) 온라인쇼핑몰, 포털, SNS, 게임 등	

3

정무위원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6064호



이 정 문

선 거 구	충남 천안시병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 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2.06.20.	제안
상임위원회	2022.09.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안이유

최근 대형 은행 직원의 수백억 원대의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나 금융당국 감독 등의 부실 문제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내부통제기준이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한 경우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은 내부통제기준이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음. 그런데, 사실상 금융지주회사가 각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업종이나 영업 특성에 맞는 내부통제기준이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기 어렵고, 자회사등의 책임성을 약화시킬 수 있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마찬가지로,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제재처분을 금융회사 업종별로 각기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것도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이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을 유지할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혼선이 있는 바, 금융위원회 고시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만 규정되어 있던 내부통제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금융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내부통제기준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의무제정의 예외 규정을 삭제함(안 제24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 삭제).

나. 금융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위험관리 결과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1항).

다. 은행, 보험회사, 여신금융회사와 그 임직원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제재처분을 통일함(안 제34조제2항 및 제35조제3항·제4항).

라.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안 제24조제3항·제4항).

4

정무위원회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5860호



배 준 영

선 거 구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정 당	국민의힘
당선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2.06.10.	제안
상임위원회	2022.09.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시중 은행의 경우 금리 인상에 따른 예대금리차의 증가로 인하여 높은 수익을 얻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은행의 예대금리가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금융당국의 은행 금리에 관한 감독 규정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은행에 대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및 그 차이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는 은행 금리 산정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으로부터 의견을 들어 개선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참고자료

[표 1] 은행의 예금금리 구성

❶기본금리:시장금리(은행채)-제비용(예보료+지준율+업무원가)±조정항목
❷우대금리:본점부서 결정 우대금리+부수거래 충족 우대금리

(자료: 금융위원회)

[표 2] 은행의 대출금리 구성

❶기준금리	+	❷가산금리							+	❸가감조정금리	
		원가	리스크 관리비용				법적 비용	기타			
		업무원가	리스크 프리미엄	유동성 프리미엄	신용 프리미엄	자본 비용	교육세, 출연료, 예보료, 지준예치금	목표 이익률		부수거래 감면금리	본부·영업점 조정금리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 2019.1.22.)

[표 3] 은행권 예대금리차 추이

(단위 : %, %p)

구 분	'19.12	'20.12	'21년		'22년					'15.1~'22.5 평균
			6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대출평균 금리	3.22	2.74	2.77	3.25	3.45	3.51	3.50	3.57	3.68	3.32
가계대출 금리	2.98	2.79	2.92	3.66	3.91	3.93	3.98	4.05	4.14	3.26
저축성수신 금리	1.60	0.90	0.94	1.70	1.65	1.70	1.74	1.87	2.02	1.51
평균 예대금리차	1.62	1.84	1.83	1.55	1.80	1.81	1.76	1.70	1.66	1.81
가계 예대금리차	1.38	1.89	1.98	1.96	2.26	2.23	2.24	2.18	2.12	1.75

* 대출 및 예금금리와 예대금리차 수치는 모두 신규취급액 기준
(자료: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2. 7.)

[표 4] 시중은행의 총수익, 이자수익,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조원, %)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총수익		46.0	47.3	48.5	53.0
	이자수익	40.5	40.7	41.2	46.0
	(비중)	(88.0)	(86.0)	(84.9)	(86.8)
당기순이익		15.6	13.9	12.1	16.9

(자료: 금융위원회)

[표 5] 공시제도 개선 주요내용('22. 8월 시행)

	예금금리	대출금리	예대금리차
개선 전	상품별 기본금리 및 최고금리 비교공시	매월 신용등급별 비교공시	분기별 경영공시
개선 후	상품별 전월 취급 평균금리 추가 비교공시	매월 CB 신용점수 구간별 비교공시	매월 비교공시

(자료: 은행연합회)

5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5235호



이 용 우

선 거 구	경기 고양시정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초선(제21대)
소속위원회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2.04.13.	제안
상임위원회	2022.09.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요주주가 보유주식을 장내에서 매도(블록딜 포함)할 경우 사전공시 의무가 없음.

따라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요주주가 보유주식을 장내에서 대량으로 매도하는 경우 시장의 혼란과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므로 주요주주의 갑작스러운 주식 장내 매도에 따른 주가 급락 등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미국은 주요주주의 주식매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사전거래계획서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강도 높은 공시·불공정거래 규제를 적용하고 있음.

이에 주권상장법인의 주요주주가 보유주식을 3개월 기간 내에 그 주권상장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3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간 후에 매도하도록 함으로써 주요주주의 갑작스러운 보유주식 장내 매도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여 일반투자자 보호에 기여하고 주요주주의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3조의3 신설 및 제446조).

참고자료

[표 1] 현행법상 지분공시 제도와 개정안의 내용 비교

구 분	주식 등 대량보유 보고(§147)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173)	개정안
취지	지배권 정보 제공	미공개정보이용 방지	시장충격 완화 및 거래 투명성 제고
주체	5% 이상 보유자	임원 및 주요주주	주요주주
대상행위	매수 + 매도 (1% 이상)	매수 + 매도 (1천주 또는 1천만원 이상)	매도 (3개월 내 1% 이상)
공시시점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내	결제일로부터 5일 내	사전
처분제한	-	-	3개월 범위에서 시행령 위임

[표 2] 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구분

구 분 / 최종 행위주체	금융투자업자·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및 금융지주회사	은행	보험회사·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위	①시정명령, ②중지명령, ③경고, ④주의, ⑤기타 조치	금감원장의 건의에 따라 ①시정명령, ⑤기타조치	금감원장의 건의에 따라 ①시정명령, ②중지명령, ③경고, ④주의, ⑤기타 조치
금감원	-	금감원장으로 하여금 ②중지명령, ③경고, ④주의 조치 하게 할 수 있음	금감원장으로 하여금 ③경고, ④주의 조치 하게 할 수 있음.

[표 3]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조치 구분

구 분	최종 행위 주체	금융투자업자·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및 금융지주회사	은행	보험회사·여신전문금융회사
임원	금융위	①해임요구, ②직무정지 등, ③문책경고, ④주의적 경고, ⑤주의	금감원장의 건의에 따라 ①해임요구, ②직무정지 등	금감원장의 건의에 따라 ①해임요구, ②직무정지 등, ③문책경고, ④주의적 경고, ⑤주의
	금감원	-	금감원장으로 하여금 ③문책경고, ④주의적 경고, ⑤주의 조치 하게 할 수 있음	금감원장으로 하여금 ③문책경고, ④주의적 경고, ⑤주의 조치 하게 할 수 있음
직원	금융위	①면직, ②정직, ③감봉, ④견책, ⑤주의	-	금감원장의 건의에 따라 ①면직, ②정직, ③감봉, ④견책, ⑤주의를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음
	금감원	-	①면직, ②정직, ③감봉, ④견책, ⑤주의를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음	금감원장으로 하여금 ①면직, ②정직, ③감봉, ④견책, ⑤주의를 금융회사에 요구하게 할 수 있음

6

정무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5950호



이 용 우

선 거 구	경기 고양시정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 횟수	초선(제21대)
소속위원회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2.06.14.	제안
상임위원회	2022.09.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거래가 확산되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온라인 상에서 비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기업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이른바 '다크패턴'에 대한 관심 또한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최근 사람을 속이기 위해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당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의 독립적인 구매결정을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게 소비자 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제8호 신설).

참고자료

<주요 다크패턴 유형>

분류		의미
행동 강제 (Forced action)	강제 가입 (Forced registration)	상품 구입시 가입을 의무화함
	정보의 강제 공개 (Forced Disclosure / privacy zuckering)	소비자가 의도한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친구사칭 스팸(Friend spam) 등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은 후 소비자의 연락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광고성 메시지 발송
	게임화(Gamification)	서비스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야만 특정 사항을 얻을 수 있도록 함
화면 조작 (Interface interference)	숨겨진 정보 (Hidden information)	재화등의 구매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계약체결 전에 제공하지 않음
	잘못된 계층구조 (False hierarchy)	실제로는 큰 차이가 없는(parallel)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설명, 아이콘, 색상 등을 이용하여 보다 비싼 상품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hierarchical)처럼 오인하게 하여 소비자 선택을 유도함
	특정 옵션의 사전선택(Preselection)	가격이 높거나 프라이버시 보호가 약한 옵션 등 사업자에게 유리한 옵션을 사전에 선택해놓음
	감정적 언어 사용 (Toying with emotion) / 수치심 부여(Confirmshaming)	감정적 표현 또는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표현을 통해 소비자가 특정 옵션을 선택하도록 유도함

화면 조작 (Interface interference)	현혹적 가격 (Misleading reference pricing) / 거짓 할인(Discount erosion)	할인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함
	속임수 질문(Trick questions)	소비자가 의도하지 않은 답을 하도록 모호한 질문을 제시함
	위장 광고(Disguised ads)	광고를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담은 콘텐츠로 위장함
	수치심 부여(Confirmshaming)	메일링리스트 등록 거절 등 소비자가 특정 선택에 대해 감정적 언어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함
반복 간섭 (Nagging)	반복 간섭(Nagging)	알림메시지 수신이나 위치 추적 권한 등을 소비자에게 반복적으로 요구함
경로 방해 (Obstruction)	취소 방해 (Hard to cancel / roach motel)	서비스 등의 가입 절차에 비해 취소 절차는 복잡하게 설정함
	회원 탈퇴 방해 (Immortal accounts)	회원 가입 절차에 비해 회원 탈퇴 절차는 복잡하게 설정함
	가격 비교 방해 (Price comparison prevention)	여러 판매 조건과 가격 비교를 어렵게 만듦
	중간 통화(Intermediate currency)	비용을 모호하게 하기 위해 가상화폐로 구입하게 함
숨겨진 규정 (Sneaking)	숨겨진 비용(Hidden costs) / 순차 공개 가격 책정(Drip pricing)	상품 판매화면에서는 총 가격의 일부만 먼저 고지하고, 소비자가 구매과정을 진행해야만 순차적으로 추가 비용을 고지함
	숨겨진 가입(Hidden subscription) / 강제 갱신(forced continuity)	소비자의 동의 없이 최초 구매가 자동 갱신되어 대금이 자동결제되도록 함
	유인 판매(Bait and switch)	광고된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을 판매함
	몰래 장바구니에 추가 (Sneak into basket)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은 상품·옵션을 장바구니에 몰래 추가
사회적 증거 (Social Proof)	허위 증거(Testimonials)	불리한 이용후기를 삭제하거나 유리한 이용후기를 거짓으로 작성
	다른 소비자의 활동 알림 (Activity messages)	최근 이 제품을 본 소비자 수를 거짓으로 표시함
시급성 (Urgency)	재고 없음(Low stock) / 높은 수요 알림(High demand message)	거짓으로 재고가 없거나 수요가 높다는 내용을 표시함
	카운트다운 타이머(Countdown timer) / 시간제한 알림(limited time message)	사실과 다르게 특정기간만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다고 표시하거나, 남은 할인기간을 거짓으로 표시함

출처: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온라인상 다크패턴 보고서('21.11월 발표)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현행법으로 규율 가능한 다크패턴 유형>

유형	주요 내용	전자상거래법 규정
숨겨진 정보 (Hidden information)	재화등의 구매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한 중요정보를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음	제13조제2항
허위 증거 (Testimonials)	불리한 이용후기를 삭제하거나 유리한 이용후기를 거짓으로 작성함	제21조제1항제1호
위장 광고 (Disguised ads)	광고임에도 광고가 아닌 것처럼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함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6804호



이 상 헌

선 거 구	울산 북구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재선(20대, 21대)
소속위원회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2.08.08.	제안
상임위원회	2022.09.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게임 내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이른바 확률형 아이템은 상당수 국내 게임사들의 수익 구조로 활용되고 있음.

현재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기댓값은 게임사의 자율규제에 따라 공개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 게임업계가 시행한 자율규제는 여러 형태의 확률형 아이템 중 일부에 대해서만 정보를 공개하는 등 효용성이 떨어짐.

이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 유도와 게임이용자 기만이 지나치게 심해진 상황임. 나아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임의로 조작하는 사례들이 여러 차례 발생하여 이용자들의 불신이 계속 커지고 있음.

이처럼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기댓값은 게임이용자의 권익과 밀접하게 연결된 문제이므로 그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

이에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게임제작업자와 게임배급업자에게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표시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신설 등).

참고자료

[표 1]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

유 형	내 용
캡슐형	우연에 의하여 그 결과물이 제공되는 아이템 등의 콘텐츠
강화형	우연에 의하여 아이템 등의 성능이 변화하는 콘텐츠
합성형	아이템 등을 결합하여 우연에 의하여 결과물을 획득하는 콘텐츠

자료: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한국게임산업협회, 2021)

[표 2]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시행 현황

구 분	모니터링 기관	아이템 정보 제공 내용
1차 자율규제('15.7)	게임산업협회	청소년 이용가 등급 대상, 구간 확률 정보만 제공
2차 자율규제('17.7)	게임문화재단 산하 게임이용자보호센터	개별 아이템 확률 정보 또는 구간 확률 정보 제공
3차 자율규제('18.11)	게임정책자율기구	개별 아이템 확률 정보 제공, 전체 등급 대상

현행 자율규제('21.12)	게임정책자율기구	개별 아이템 확률 정보 제공 및 강화·합성 확률 정보 제공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표 3] 확률형 아이템 해외 규제 사례

국가명		규제 내용	세부 내용
아시아	중국	확률공개(법), 천장 제도	- 법을 통해 확률공개를 의무화('17.5월~)하고, 판호 규정을 통해 **확률을 백분율이 아닌 횟수로 표시**('19.4월~)
	일본	확률공개(자율) 부분금지(법)	- 일본온라인게임협회(JOGA)의 자율규제로 확률공개 ('16.4월~) - 경품표시법 근거 **이중확률(콤프가챠)는 판매금지** ('12.7월~)
유럽	벨기에	판매금지(법)	-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금지** ('18.4월~) * 다만, 대부분의 모바일게임은 여전히 확률형 아이템을 활용함에도 제재가 부재하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
	네덜란드	금지추진(법안)	- '확률형 아이템 판매 금지' 촉구 ('22.6월, 하원 의원 다수 성명)
	독일	부분금지(법)	- **미성년자 대상** 확률형 아이템 판매 **금지** ('21.3월~, 청소년보호법)
	스페인	부분금지 추진(법안)	- 미성년자 대상 확률형 아이템 판매 금지, 확률형 아이템 포함 게임의 방송광고 시간 제한 (01~05시만 가능) 추진('21.7월~)
	영국	자율 기반 (이용자 보호 시책)	- 확률형 아이템에 과다결제 유도 등 우려가 있으나, 우선 **업계 주도의 이용자 보호시책 마련** 추진('22.7월~)
미주	미국	자율 기반 (포함 여부 표시)	- 민간 등급분류기관(ESRB)에서 게임등급과 함께 **확률형 아이템 포함 여부**(Includes Random Items) 표시('20.4월~) - 사안에 따라 해당 확률형 아이템이 도박에 해당하는지 판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6775호



양 향 자

선 거 구	광주 서구을
정 당	무소속
당선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2.08.04.	제안
상임위원회	2022.09.1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안이유

반도체 협력 또는 경쟁 국가로서의 미국, 중국, 대만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대규모 집중 투자와 파격적인 인재양성 정책을 지원하고 있어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임.

미국은 자국 반도체 산업에 약 68조원(52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 지원법을 준비하고 있고, 중국은 '반도체 굴기 2025'를 발표하면서 약 200조원에 이르는 자금을 투자하고 반도체 기업에게 최대 10년간 소득세를 면제할 예정이며, 대만도 매년 1만여명 규모의 신규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하여 학사 정원의 10퍼센트와 석·박사 정원의 15퍼센트를 확대하는 등 반도체 관련 주요국들은 파격적인 반도체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임.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은 국가·경제 안보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첨단전략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과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임.

2022년 8월 4일에 시행되는 현행법은 경쟁국들의 파격적인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관련 산업계 등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략기술보유자에 대한 지원,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인·허가 등의 신속처리, 전략산업등의 전문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교육공무원 등의 임용 자격기준,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에 전략기술보유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9조제1항제10호 신설).

나.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을 위하여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다.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안 제16조제3항제2호 신설).

라.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을 위하여 인·허가권자는 인·허가의 처리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허가등의 처리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연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4항).

마. 수도 및 전기 등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에서 설치할 필요가 있는 기반시설에 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조항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공공기관의 사업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1항 및 제3항).

바. 전략기술보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전략산업등의 설비구축 및 연구·개발 투자와 관련된 인·허가,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사. 전략산업 및 전략기술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추진하는 인력양성사업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추가함(안 제35조제1항제4호 신설).

아. 전략산업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또는 재교육을 위하여 교육공무원 등을 임용할 경우 임용 자격기준, 겸임 또는 겸직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37조의2 신설).

자. 전략산업등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3 신설).

주요내용

[표 1] 2022년 글로벌 기업의 반도체 산업 투자 비교

(단위: 억달러)

기업	투자지역	금액
Intel	미국	435
	말레이시아	71
	유럽	5 ~ 10
TSMC*	미국	120
	일본	70
	중국	30
	유럽	5 ~ 10
삼성	미국	170
GF*	미국	10
	싱가포르	40
TI*	미국	7 ~ 30

주) TSMC는 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mpany, GF는 Global Foundries, TI는 Texas Instruments를 의미함.

[표 2]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개정 효과

개정안	주요 내용	개정 효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안 §9)	▸전략기술보유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전략산업특화단지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사항으로 추가	☞ 범부처 차원에서 이견 조율 및 전략기술보유자에 대한 지원 및 특화단지 조성에 관해 추진 용이
특화단지 지정 (안 §16)	▸특화단지 조성 시 국가산단 지정 요청(산업부→국토부) ※ 요청을 받은 국토부장관은 국가산단 지정이 우선적으로 추친될 수 있도록 노력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을 특화단지 지정 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대상에 포함	☞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국토부장관이 인프라 설치 관련 인·허가의 협의권자로서 관계 지자체와의 인·허가 협의 유리하여 상대적으로 특화단지의 신속한 조성 가능 ☞ 특화단지 지정 시, 수도권 외 지역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장도 우선 고려하여 기존 사업장의 원활한 특화단지 지정 추진 가능
인·허가등 신속처리 특례 (안 §19)	▸인·허가등 신속처리 미적용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제한 ▸인·허가등 처리기간을 30일→15일로 단축	☞ 인·허가 신속처리 예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한정함으로써 인·허가등 지연 방지 및 신속한 인·허가등 지원 ※ 주민 민원 우려 등으로 지자체가 인허가를 과도하게 지연하는 사례 방지
특화단지운영지원 (안 §20)	▸특화단지 조성·운영지원을 의무행위로 규정(강행규정)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대상에 포함	☞ 특화단지 지원을 정부의 의무로 규정하여 신속하게 우리 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고 반도체 등 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입주기관 지원 (안 §21)	▸특화단지 입주기관 지원을 의무행위로 규정(강행규정)	
예타특례 (안 §27)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공공기관의 사업 추가 ※ 예타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 및 예타 면제 가능	☞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을 위하여 대상지역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추진하는 전력, 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 및 특화단지 건설 등 사업에 대해 예타 특례 부여하여 기업 투자 적극 뒷받침

주요발언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상헌

양향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인허가 등의 신속 처리,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기반시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수도권 내 대학 정원 확대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반도체산업은 무역 분야를 넘어 국가 경제·안보의 미래 향방을 결정하는 첨단기술 분야로 확장 중인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미국, 일본 등 경쟁국에 상응하는 국가적 지원을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해당 전략산업에 대한 국내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지원을 강행 규정으로 한 점,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수도권 내 대학의 정원 확대 등과 관련하여서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들과의 원활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략)

■ 이용빈 위원



산자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지역균형발전 전략은 배고픈 지역에 떡 하나 더 주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저희가 집중해야 될 전략적인 정책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양향자 반도체특위 위원장께서 K칩스법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경쟁력은 외면하고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그것을 강행하는 법안에 대해서 저희들은 지역외면법 아닌가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인재 양성 그리고 정부의 선제적 투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속내가 실제로는 수도권 인재 양성과 수도권 집중 투자를 지금 획책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 고려했던 현행법을 수도권 외 지역뿐만 아니라 전략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또 그 지원시설이 입주해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기업의 요구대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 펼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요.

특히나 윤석열 정부가 용인 또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수도권 일대에 세계 최대의 K-반도체 벨트를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지역을 소외하게 된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수도권의 반도체학과 증원 부분만 봐도 지역 의견을 수용하지는 않고 윤석열 정부가 마이웨이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평가되고 있는데……

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산업 격차를 해소하겠다라고 하는 장관의 지난 의지 표명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고 또 구체적인 계획들을 의원실로 보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균형발전은 정말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산업 발전과 동시에 아마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중요한 정책 목표다 이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양향자 의원께서 발의하신 법에 종전에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한다 거기에 다른 기존의 지역이나 이런 것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비수도권 지원을 차별하거나 또는 더 낮게 보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아마 반도체 산업이나 또는 첨단산업의 입지 특성에 따라서 그런 걸 전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들어 두자 아마 이런 의도로 저는 이해하고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첨단산업이 반도체 산업 하나인데 앞으로 이제 바이오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고 배터리도 있고 그다음에 로봇도 있고 많이 나올 겁니다, AI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제 생각에는 주로 지역 산업으로 저희가 배치해서 지역에서 특화단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최대한 고려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반도체 하나를 갖고 있고 이건 아주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또 인력들이 주로 수도권에 많이 몰리기 때문에 좀 불가피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입지에 있어서. 그렇지만 다른 또 첨단산업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산업들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에 우선을 둔다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략)

■ 양향자 위원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광주 서구을입니다. 그래서 이용빈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호남권·영남권 또 강원·충청권 포함해서 반도체 특화단지 또는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하는 지자체장님들의 선거 공약뿐만 아니라 계획들을 듣고 있고요.

어느 때보다 중앙에서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65년도 상황을 보시면 다들 들으셨겠지만 국가적 어떤 힘을 국토균형발전 차원의 리더십을 가지고 투여했던 그 결과가 사실은 지금의 반도체 산업을 이렇게 세계의 반열 위에 올려 놓는 그런 힘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광주, 전남 호남권만 해도 지금 AI 반도체 특화단지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화순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 클러스터가 유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맞는 어떤 첨단기술의 메카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지금 하자라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이기도 하고 국회 차원의 특위를 만들어서 우리가 국토균형발전 차원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에 대해서 어떤 위원님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큰 발전을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재부가 특히 세액공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난색을 표명했다 이런 언론의 보도를 봤습니다만 명확하게 정량적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재부는 국가 재정을 책임지는 부처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반대 의견을 내야 되는 것이 소임이고 그럴수록 좀 더 단단하게 우리가 법안을 준비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또한 교육부 또 다른 부처에서도 그런 반대 의견을 내시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자부에서도 무조건 오케이 하시리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다만 이 법안이 정말 국가의 명운을 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위원님들께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반도체 이 패키지 법은 국토균형발전 차원도 중요하지만 전 세계적 관점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을 과연 기술의 허브 국가로 만들 수 있느냐, 대한민국을 과연 기술의 클러스터로 만들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권을 지킬 수 있느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3170호



정 태 호

선 거 구	서울 관악구을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 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1.11.08.	제안
상임위원회	2022.05.1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소위원회	2022.09.21.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의결 (수정가결)
상임위원회	2022.09.22.	상정
		소위회부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소위의결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에는 기업의 최우선 가치를 재무적 요소에 두고 기업이 얼마만큼의 이익을 창출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지만, 최근 전세계적으로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이는 기업의 사회 기여와 지속 가능성 달성을 위한 비재무적 성과 지표로서 이를 경영에 도입할 것을 요구하는 국가와 기업들이 대폭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전세계적 변화의 필요성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변화 대응 수준도 선진국의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중견기업에 비하여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중소기업의 변화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계획을 우선 승인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이 외부환경 변화에 발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 신설).

참고자료

[표1] 사업전환제도 개요

구 분		주요 내용	
근거 법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06년 제정)	
사업개요	목 적	경제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	
	적용 범위	① 경제환경의 변화로 구조적으로 경쟁력 확보가 어려워 사업전환이 필요한 중소기업자 ② 미래의 유망업종·전략업종으로 사업전환이 필요한 중소기업자	
	지원 대상	업력 3년이상 중소기업(근로자수 5인 이상)	
	전환 유형	업종전환	기존업종을 양도·폐기하고 신규업종으로 100% 전환
		업종추가	신규업종의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 비중이 30% 이상 되는 경우
지원 절차		기업: 사업전환 계획 제출 → 중진공: 진단 및 타당성 평가 → 중진공: 사업전환계획 승인 → 기업: 계획이행 (3년) → 중진공: 연계 지원 (융자, 컨설팅) → 중진공: 사후관리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참고자료 1】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제도 운영현황

□ 제도 개요

○ **(목적)** 경제환경 및 경영여건 변화에 대응한 사업전환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

○ **(지원근거)**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06년 제정)

○ **(전환유형)** 기존 영위하던 업종에서 새로운 업종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업종전환과 업종추가로 구분

구 분	주요 내용	전환비율
업종전환	현재 영위 업종 사업 폐지 →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	100%
업종추가	현재 영위 업종 축소 또는 유지 → 새로운 업종 추가	30% 이상

* 전환비율 : 전환·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 **(지원대상)** ①경제환경 변화로 경쟁력 확보가 어렵거나, ②미래 유망업종 또는 국가 전략업종으로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 사업전환계획 승인 신청일 현재, 업력 3년 이상,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기업

○ **(지원절차)** 사업전환계획 승인 후 3년간 이행하고, 정부는 자금 등 지원

기 업	→	중진공	→	중진공	→	기 업	→	중진공	→	중진공
사업전환 계획 제출		진단 및 타당성 평가		사업전환계획 승인		계획 이행 (3년)		연계 지원 (융자, 컨설팅)		사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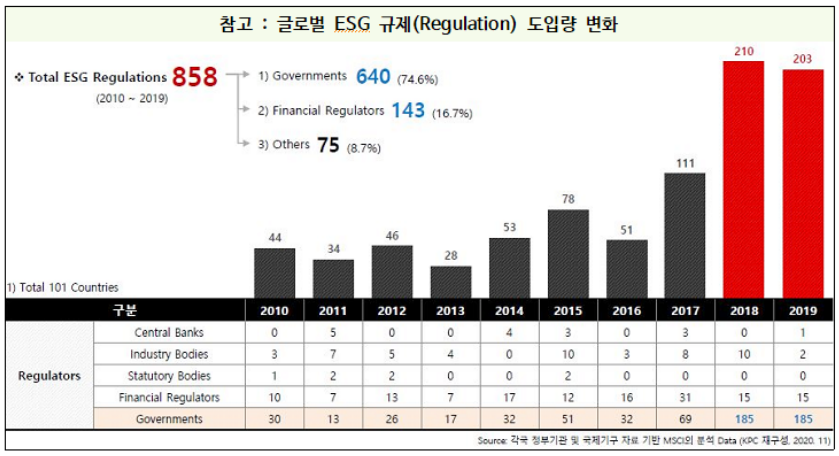
□ 지원 실적

구 분	'15	'16	'17	'18	'19	'20	'21
사업전환계획 승인(건)	99	169	126	107	100	226	114
사업전환자금 (억원)	1,120	1,250	1,250	1,300	1,100	1,570	1,000

【참고자료 2】ESG 관련 국내외 동향

□ 글로벌 ESG 경영 동향

○ (ESG 규제 증가) 최근 3년 사이 정부주도의 ESG 규제 도입량이 급증하고 있는 경향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Regulators	Central Banks	0	5	0	0	4	3	0	3	0	1
	Industry Bodies	3	7	5	4	0	10	3	8	10	2
	Statutory Bodies	1	2	2	0	0	2	0	0	0	0
	Financial Regulators	10	7	13	7	17	12	16	31	15	15
	Governments	30	13	26	17	32	51	32	69	185	185

○ (EU) 500인 이상 기업의 사회·노동·인권·반부패 정보공시 의무화('18), 국가별 연기금 중심

ESG 정보공시 의무제도 도입

* ①노르웨이 국부펀드(GPFG) : 인권침해·환경파괴·부패 등 행위 발생시 투자배제②네덜란드 공무원연금(ABP) : 화석연료 투자 철회, 인권리스크 高분야 개선 요구

○ (국제기구) UN은 유엔책임투자원칙(UNPRI, 2006)을 통해 ESG 이슈를 고려한 사회책임투자를 장려, OECD 기업책임경영 실천지침 채택('18)
○ (글로벌기업) 다국적기업 공급망 대상 ESG 이행 요구 증가

구분	ESG 이행 요구 내용
A사	· '30년 탄소배출 제로선언('20.7) → 협력사에 탄소배출 감축 요구 · 공급망 환경·사회 평가 시행 및 재계약 기준으로 활용 * 평가요소: E(용수, 폐기물 등), S(노동, 인권 등)
B사	· RE100 가입 및 협력업체 재생에너지 100% 사용 요구 * 다국적기업에 납품하는 SMEs는 재생에너지 사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전망

○ (금융기관) Moody's, S&P, Fitch 등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들은 기업의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기존의 재무적 가치 외에 ESG를 적용

* 국가, 다국적기업, 대기업 중심으로 적용 중이나 중소기업으로 단계별 확대 전망

○ (투자기관) Black Rock 등 글로벌 선도 투자기관들이 투자표준으로 ESG채택, 미흡 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

* 기후변화대응 미흡 53개 투자 기업 주주권 행사 (자료: BlackRock 2020 AR)

□ **국내 ESG 경영 동향**

○ (금융위원회)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 2025년부터 ESG공시 의무화 도입, 2030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 (국민연금)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2022년까지 운영기금의 50%를 ESG 기반에 투자하겠다고 발표

○ (정부기관) ESG 무역장벽 대응을 위한 K-ESG표준 개발 추진(산업부, '20~'22), 공공조달 과정 내 ESG 평가 반영 계획 추진(조달청, '21)

○ (민간기업) 대기업 10대 그룹 중 8개사는 ESG위원회를 설치하거나 기존 위원회를 확대·개편, 또한 협력기업 대상 ESG 평가 도입 확산

주요발언

<제400회 국회 제4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위원장 한무경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한무경 소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여 1건의 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 1건의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이를 통합한 1건의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사업 전환을 하려는 중소사업자의 전환계획을 우선 승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우선 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구체화하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10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6482호



강 훈 식

선 거 구	충남 아산시을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재선(20대, 21대)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2.07.15.	제안
상임위원회	2022.09.1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시간에 대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주 5일제 근무로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선진국은 이미 주 4일제를 도입하고 있고, 최근 우리나라도 일자리 나누기의 필요성, 여가문화의 확산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현행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주 36시간으로 단축하고 그에 맞추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의 규정을 정비하여 주 4.5일제 근무를 도입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 및 고용기회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제51조제1항 · 제2항, 제51조의2제1항, 제51조의3).

참고자료

[표 1] 근로기준법 상 현행 근로시간제

<기본 근로시간 규정>	<주52시간 이내>	<주52시간 초과>
기본 제도	유연근로제	연장근로 예외
①**법정**: 일 8, 주 40 ②**연장**: 주 12	(운영형태 변경) 탄력, 선택 (계산방법 변경) 재량, 사업장 밖	특별연장근로, 추가연장근로, 특례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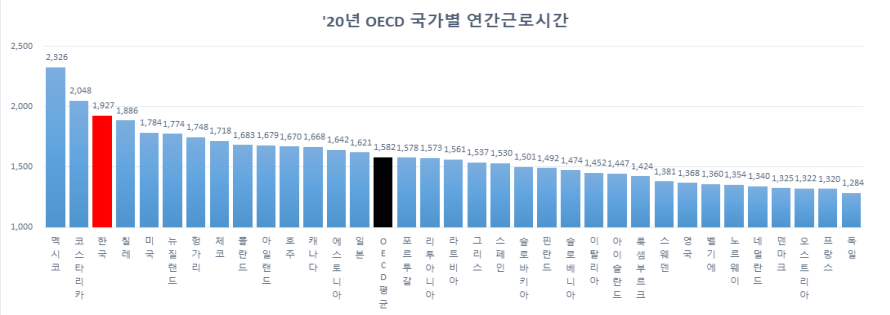
[그림 1] OECD 대비 연간 근로시간 비교

OECD 대비 연간 근로시간 비교(전규모 1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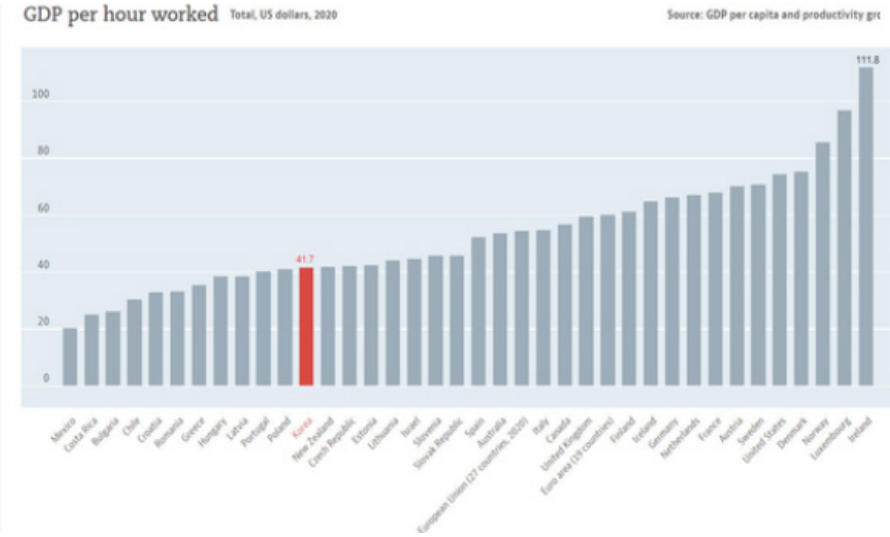
(단위: 시간)

구분	'95	'00	'05	'10	'15	'17	'18	'19	'20
멕시코	2,360	2,360	2,353	2,337	2,348	2,348	2,347	2,336	2,326
한국	-	-	-	-	2,058	1,996	1,967	1,957	1,927
미국	1,844	1,831	1,795	1,779	1,788	1,783	1,788	1,784	1,784
캐나다	1,768	1,778	1,741	1,718	1,718	1,705	1,721	1,703	1,668
일본	1,910	1,853	1,804	1,754	1,734	1,720	1,706	1,669	1,621
OECD평균	1,720	1,731	1,710	1,672	1,686	1,678	1,674	1,666	1,582
프랑스	1,480	1,444	1,427	1,439	1,422	1,416	1,424	1,421	1,320
독일	1,446	1,377	1,349	1,350	1,337	1,331	1,332	1,330	1,284

* 출처: OECD, Stats.OECD.org('20년 기준 내림차순, OECD 34개국 중 3위)('21.8.23.추출)



[그림 2] 세계 국가별 시간당 노동생산성(´20년 기준)



11

국토교통위원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6135호



배 현 진

선 거 구	서울 송파구을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2.06.24.	제안
상임위원회	2022.09.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안이유

현행법은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을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최초로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승인된 날로 하고, 재건축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은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구간을 나누어 10%에서 50%의 부과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조합으로서 추진위원회는 재건축사업에 대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니며, 2006년 현행법 제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부과율 산정기준은 그동안의 주택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여 초과이익 환수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이 과도한 측면이 있고, 재건축 대상 주택 등을 장기보유하고 있는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재건축부담금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을 조합설립인가일로 하고, 장기주택보유자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주택가격 상승 등을 고려하여 부과율을 조정함으로써 재건축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고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1세대 1주택자로서 주택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조합원에 대하여는 그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재건축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을 '최초로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날'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변경함(안 제8조제1항).

다. 재건축부담금 계산 시 재건축초과이익의 하한 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고 각 구간별 부과금액을 조정함(안 제12조).

참고자료

참고1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 **(목적)**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여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

* 1차 유예 : 2년('12.12.18.~'14.12.31.), 2차 유예 : 3년('14.12.31.~'17.12.31.)

□ **(납부의무자)** 조합&신탁업자 * 부과된 재건축부담금을 조합원별 배분

□ **재건축부담금 산정방식**

◈ **재건축부담금 = {종료시점 주택가액 - (개시시점 주택가액 +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 + 개발비용)} × 부과율**

구 분	적용내용
개시시점 주택가액	♣ **개시시점의 공시주택가격 총액**에 공시기준일부터 개시시점까지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반영한 금액 * 부과개시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 10년 초과시 종료시점부터 역산하여 10년이 되는 날을 부과시점으로 함
정상주택 가격상승분	♣ 개시시점 주택가액에 **정기예금이자율 또는 평균주택가격상승률 중 높은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개발비용	♣ **공사비, 설계감리비, 제세공과금, 조합운영비** 등 조합운영 및 주택건설 전반에 소요된 비용
종료시점 주택가액	♣ **①조합원 분양가격**(준공시점 공시가격), ②일반분양분 주택가격, ③소형주택인수가격을 합산한 금액
부과율	♣ **조합원 평균이익에 따라 0~50%까지 누진적용** * 조합원 1인당 3천만원까지 면제

<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별 부과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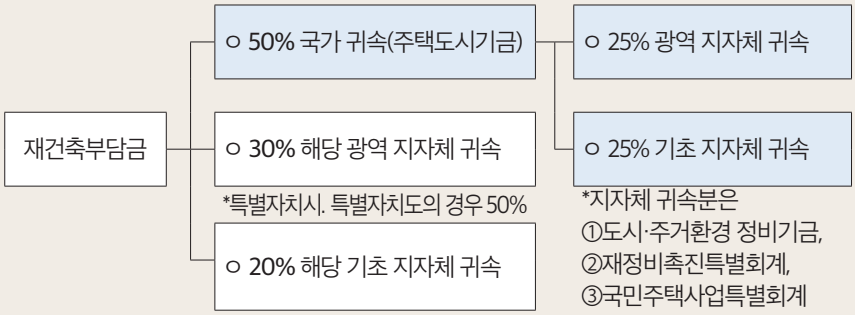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부과율 및 부담금 산식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금액의 10% × 조합원수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20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20%) × 조합원수
7천만원 초과 ~ 9천만원 이하	(600만원 + 7천만원을 초과금액의 30%) × 조합원수
9천만원 초과 ~ 1억1천만원 이하	(1,200만원 + 9천만원 초과금액의 40%) × 조합원수
1억1천만원 초과	(2,000만원 + 1억1천만원 초과금액의 50%) × 조합원수

참고2 **재건축부담금 배분 · 용도 및 부과절차**

□ **(배분)** 재건축부담금은 **국가**에 50%, 해당 **광역** 30%**(세종 · 제주** 50%**), 기초 지자체**에 20%가 각각 귀속

* 국가징수분은 다음해에 지자체를 평가하여 광역 · 기초 지자체에 각각 50%씩 지원

< 재건축부담금 지원 배분기준 >



□ **(용도)** 지자체에 배부된 재건축부담금은 ❶국민 · 임대주택 건설 · 매입 및 관리비, ❷정비사업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❸기반시설 설치비용 등 주거복지 향상 등을 위해 활용

□ **(부과절차)** 재건축부담금 납부의무자인 조합이 **부과종료시점(준공)부터 1월 이내**에 내역서를 해당 기초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면

* 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임

○ 기초 지자체장은 **부과종료시점(준공)부터 5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하고, 납부의무자는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 의무**

< 재건축부담금 부과절차 >

예정액 통지	산정자료 제출	부담금 사전통지	부담금 결정부과
사업시행인가後 조합 제출자료(3개월) → 1개월내 통지	사업 준공後 1개월 이내 개발비용 등 관련자료 제출	사업 준공後 3개월 이내 서면통지	사업 준공後 5개월 이내 결정통지
지자체→조합	조합→지자체	지자체→조합	지자체→조합

Policy & Business Report



V. 본회의

1. 통과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본회의 통과법률안 목록

주요법률안	소관법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O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4736호



이 학 영

선 거 구	경기 군포시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 횟수	3선(19대, 20대, 21대)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본회의	2022.09.27.	원안가결
	2022.10.07.	정부이송

제안이유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의 개정안인 키갈리 개정서(2016. 10. 15. 채택, 2019. 1. 1. 발효)의 국내 시행을 위해, 특정물질의 정의를 확대하여 수소불화탄소(HFCs)를 규제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부담금의 산정기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부담금의 가산금 요율 한도를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부합하게 조정하며, 과태료 상한액 조정 등 그간 법령개정 수요를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 명칭 변경개정 법률(안)은 오존층파괴물질 외에 지구온난화물질인 수소불화탄소(HFCs)를 특정물질에 포함하고, 특정물질의 제조 및 수출입 · 파괴 · 판매 등을 총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게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특정물질 정의(안 제2조제1호 및 제5호)특정물질을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하여 기존 오존층파괴물질은 제1종으로, 수소불화탄소(HFCs)를 제2종으로 하고, 제2종 특정물질의 생산량 · 소비량 산정치 산식에 사용되는 용어로서 지구온난화지수를 추가함.

다. 부산물로 배출되는 제2종 특정물질 파괴 노력(안 제12조제2항 신설)키갈리 개정서에 따라, 특정물질 제조 시 부산물로 생성되어 배출되는 제2종 특정물질 파괴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함.

라. 부담금 산정기준의 세부 사항 위임(안 제24조의4)제2종 특정물질에 대한 별도 계산식 신설 필요성을 고려하여 기존 부담금 산정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에 해당하는 계산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마. 부담금의 징수 방법 정비(안 제24조의5)납부기한 다음 날에 부담금을 납부할 경우에 대한 1일분의 가산금을 산출할 수 없는 현행 규정을 개선하고, 체납된 부담금의 가산율 한도를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맞게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으로 인하 조정함.

바. 과태료 상한액 정비(안 제32조)과태료금액 지침('19.2월, 법제처)에 따른 위반행위 유형별 기준금액을 고려하여 과태료 상한액을 현실화함.

참고자료

[표 1] AIM 규칙에서 규제 물질로 등재된 HFCs

수소불화탄소(HFC)	화학식	지구온난화 영향	수소불화탄소(HFC)	화학식	지구온난화 영향
HFC-134	CHF2CHF2	1,100배	HFC-245ca	CH2FCF2CHF2	693배
HFC-134a	CH2FCF3	1,430배	HFC-43-10mee	CF3CHFCHFCF2CF3	1,640배
HFC-143	CH2FCHF2	353배	HFC-32	CH2F2	675배
HFC-245fa	CHF2CH2CF3	1,030배	HFC-125	CHF2CF3	3,500배
HFC-365mfc	CF3CH2CF2CH3	794배	HFC-143a	CH3CF3	4,470배
HFC-227ea	CF3CHFCF3	3,220배	HFC-41	CH3F	92배
HFC-236cb	CH2FCF2CF3	1,340배	HFC-152	CH2FCH2F	53배
HFC-236ea	CHF2CHFCF3	1,370배	HFC-152a	CH3CHF2	124배
HFC-236fa	CF3CH2CF3	9,810배	HFC-23	CHF3	14,800배

자료: regulations.gov 미국 환경보호청

[표 2] 개정안의 과태료 상한액

구분	현행	개정안
· 제조·수입업자 등에 대한 검사·수거의 거부·방해·기피	500만원 이하	동일
· 제조업자 지위 승계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1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 제조업 허가의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 제조업의 휴업·재개업·폐업신고 · 특정물질 제조수량 신고(1kg 미만)		300만원 이하

[표 3] 행위유형별 금액 설정 비교

행위유형	내용	개정안	과태료금액 지침상 최빈(最頻) 금액
조사	조사의 방해·기피·회피, 자료제출 불응 등	제32조제1항제2호	500만원
신고(승계)	인허가 대상업종 등 승계신고	제32조제1항제1호	500만원
신고(변경)	경미한 변경신고	제32조제2항제1호	300만원
신고(휴폐업)	휴업·폐업신고	제32조제2항제2호	300만원
신고(행위)	안전 관련성 낮고, 영리활동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행위	제32조제2항제3호	300만원

※【참고자료1】키갈리 개정서 주요 내용

① (감축대상) HFC-134, HFC-134a, HFC-23 등 HFC 계열 18종

* HFC는 연간 약6.3천만CO2톤('20년 기준) 생산·수입되며, 주로 에어컨·냉장고 냉매(63%), 소화약제(24%)로 사용

② (감축일정) 선진국과 개도국을 구분하여 최장 '47년까지 80~85% 감축

ㅇ 우리는 개도국1 그룹으로, '24년부터 '45년까지 기준수량의 80% 감축

<국가별 HFC 감축일정>

구분	개도국 그룹1	개도국 그룹2	선진국
해당국가	우리나라 및 개도국 그룹 2 제외 개도국	GCC(걸프만 국가), 인도,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	미국, EU, 일본, 러시아 외 4국 등
기준수량	'20~'22 HFC 평균소비량 +HCFC 기준수량의 65%	'24~'26 HFC 평균소비량 +HCFC 기준수량의 65%	'11~'13 HFC 평균소비량 +HCFC 기준수량의 15%(25%)
감축일정	동결 '24 10% 감축 '29 30% 감축 '35 50% 감축 '40 80% 감축 '45	동결 '28 10% 감축 '32 20% 감축 '37 30% 감축 '42 85% 감축 '47	10% 감축 '19 40% 감축 '24 70% 감축 '29 80% 감축 '34 85% 감축 '36

* 선진국·개도국 구분 기준 : 몬트리올의정서 제5조제1항에 따라, 국민 1인당 연간 특정물질(CFC, 할론) 소비량이 0.3ODP(오존파괴지수)kg 미만인 국가를 개도국으로 분류('92)

③ (제도정비) HFC류 수출입 허가제 실시

ㅇ 선진국은'19년부터, 개도국은'21년부터 수출입 허가제 실시

* 키갈리 개정서는 비준서 기탁 후 90일 후에 당사국에 발효되며, 비준 시기에 맞추어 제도정비 필요('22년 관련 법령 정비시 '23년부터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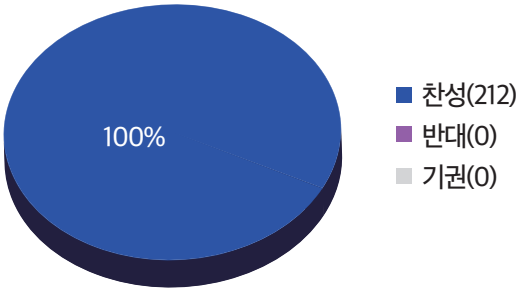
④ (통계보고) 생산 · 수출입량을 사무국에 매년 보고

⑤ (HFC-23 파괴) HCFC-22 제조 시 생성되는 HFC-23 부산물을 최대한 파괴

* 장비누출, 공정배출구 및 파괴장치에서 방출되는 HFC-23 부산물을 일컬음. 다만, 사용을 위해 포집한 양은 제외(키갈리개정서 제3조)

본회의 표결 결과

■ **제안 / 표결 일자** : 2022.02.10 / 2022.09.027
■ **발의자 / 제안자** : 이학영의원 등 10인
■ **표결 의원** : 재석 212인 / 재적 299인
■ **표결 결과** : 원안가결 212인(찬성 212인, 반대 0인, 기권 0인)



찬성 (212인)

강민국 강병원 강은미 강준현 고민정 고용진 구자근 권명호 권성동 권칠승
기동민 김경협 김기현 김도읍 김두관 김민기 김민철 김병욱 金炳旭 김병주
김상훈 김상희 김성원 김성주 김성환 김수흥 김승남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선 김영주 김영진 김영호 김예지 김용민 김용판 김 웅 김의겸 김정호
김주영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학용 김한규 김한정 김형동 김회재 김희국
노용호 노웅래 류성걸 류호정 문진석 민형배 민홍철 박대수 박대출 박범계
박병석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성중 박수영 박영순 박완주 박재호 박 정
박정하 박찬대 박형수 박홍근 배진교 변재일 서동용 서범수 서병수 서삼석
서영교 서일준 설 훈 성일종 소병철 소병훈 송갑석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호 신동근 신영대 신정훈 심상정 안규백 안민석 안병길 안호영
양금희 양기대 양이원영 양정숙 양향자 어기구 오기형 오영환 용혜인 우상호
우원식 위성곤 유경준 유동수 유상범 유의동 윤건영 윤관석 윤두현 윤미향
윤상현 윤영덕 윤영석 윤영찬 윤재갑 윤주경 윤준병 윤창현 이개호 이달곤
이동주 이만희 이명수 이병훈 이상민 이수진 이양수 이 용 이용선 이용우
이용호 이원욱 이원택 이은주 이인선 이인영 이장섭 이재명 이종배 이종성
이주환 이철규 이탄희 이학영 이해식 이헌승 이형석 임병헌 임오경 임이자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철민 장혜영 전봉민 전용기 전재수 전주혜 전해철
정동만 정성호 정우택 정일영 정점식 정청래 정태호 정필모 정희용 조경태
조수진 조승래 조오섭 조은희 조정훈 주철현 주호영 지성호 진선미 진성준
천준호 최강욱 최기상 최영희 최인호 최춘식 최형두 하태경 한기호 한무경
한병도 한준호 허 영 허은아 허종식 홍기원 홍석준 홍성국 홍익표 홍정민
황보승희 황운하 의원

Policy & Business Report



별첨

1. 용어해설
2. 국회일정표

용어해설

제안 ·····

1) 의원 발의

법률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서 소정의 찬성자(발의자 포함 10인 이상)와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안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되, 발의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인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위원회 대안마련

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입안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내용을 위원회에서 질의·토론·축조 심사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채택(의결)하거나 위원의 동의(動議)로 제안된 내용을 위원회에서 직접 심사·의결 또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사·보고하게 한 다음 의결함으로써 위원회안을 마련하게 된다.

회부 ·····

의장이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을 심사할 권한이 있는 소관 위원회에 송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회의장은 법률안이 제출되면 이를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 심사할 권한이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한다. 폐회나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국회법」 §81①). 또한 그 법률안의 내용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위원회에도 이를 회부한다.

상정 ·····

위원회에 법률안이 회부되면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정한다(「국회법」 §49 ②). 이 경우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15일(제정법률안, 전부개정법률안 및 폐지법률안은 2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는 5일)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국회법」 §59). 이는 의원에게 충분한 검토시간을 주기 위한 조치로서 이상의 기간을 숙려기간이라 한다.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않은 의안은 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위원회에 자동상정 된 것으로 보도록 하되,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국회법」 §59의2).

제안설명 ···

법률안이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상정되면 제안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법률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및 제안취지를 설명한다. 의원발의 법률안은 발의한 의원이 1인인 경우에는 발의 의원이, 수인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자가 설명을 하며, (대표)발의자가 설명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다른 발의자나 찬성자가 대리하여 설명할 수 있다.

검토보고 ···

의사일정에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필수적이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소속 위원이 안건을 용이하고 능률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제안이유, 문제점, 이해득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분석하여 작성한 보고서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법률안의 위원회 상정일 48시간 전까지 소속 위원에게 배부하고 (「국회법」 §58⑧), 위원회에서 구두로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위원회제안 법률안의 경우에는 제안과정에서 전문위원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따로 하지 않는 것이 통례이다.

대체토론 … 대체토론(general debate)이란 안건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당부에 관한 일반적인 토론을 말하며 제안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국회법」 §58①). 안건 전체에 대한 문제점과 당부를 검토하고, 문제점의 시정을 위한 여러 가지 수정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가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대체토론이 끝난 후에 하도록 하고 있다(「국회법」 §58③). 이는 소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할 때 대체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이나 의견 등을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함으로써 전체위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려는 취지이다.

질의란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에게 의문점을 물어서 밝히는 것으로 의원발의 법률안인 경우에는 제안의원 외에도 그 법률안을 소관하는 주무부처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을 출석하게 하여 집행상의 제반 문제점을 질의할 수 있다.

공청회·청문회 …… 위원회는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제정법률안이나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국회법」 §58⑥). 「국회법」은 공청회·청문회의 개최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나, 대체토론이 끝나고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이 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축조심사···· 축조심사란 의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심사하여 나가는 것을 말하며, 실제로는 쟁점이 있는 주요 주제별로 한 주제씩 심사를 해 나가고 있다. 안건의 내용과 심사의 정도에 따라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은 반드시 축조심사를 거쳐야 한다(「국회법」 §58⑤). 원칙적으로 축조심사는 전체회의와 소위원회에서 각각 실시되어야 하지만(「국회법」 §57⑦·§58①),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소위원회에서 축조심사를 마친 점을 감안하여 전체 위원회에서 간소하게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찬반토론···· 찬반토론은 의제에 대하여 찬반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다. 토론은 소견을 개진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찬성 또는 반대의 이유와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찬반토론은 신청자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국회법」 §106).

심사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국회법」 §66①).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본회의의 의제가 되지 않는 의안에 대하여도 반드시 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표결 …… 표결은 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이 의제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수를 집계하여 위원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절차이다. 위원회에서의 표결은 본회의의 표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국회법」 §109 ~ §114의2). 표결의 방법에 있어서는 기립 표결이 통례이나 거수표결도 가능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국회법」 §54). 번안동의(「국회법」 §91),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국회법」 §85의2①) 및 법사위 계류법안 중 본회의 부의요구(「국회법」 §86③)에 대한 표결을 제외하고는 특별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위원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위원회는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의제가 간단하고 특히 반대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는 위원장이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결을 선포하는 약식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원안의결

위원회에서 의원 또는 정부가 제안한 의안을 수정 없이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는 것이다. 이는 내용상의 변경이 없음을 의미하며 문맥의 흐름을 바르게 하기 위한 단순한 자구의 변경이나 오자·탈자·한자의 한글로의 표기 등의 변경이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로 수정되어 그 내용이 심사보고서에 반영되더라도 원안의결로 본다.

2) 수정의결

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원안의 취지와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원안의 내용·체계·형식 및 자구의 일부를 추가·삭제·변경 등을 하는 것이다.

3) 대안의결

"대안"이란 원안과 일반적으로 그 취지는 같으나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전연 다르게 하여 원안을 대신할 만한 내용으로 변경하여 제출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수정안의 성격을 띤 것이다.
대안에는 위원회에서 원안이 심사되는 동안에 의원이 30인 이상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제출하는 "의원발의 대안"(「국회법」 §95④)과 위원회에서 원안을 심사하는 과정에 원안을 폐기하고 그 원안에 대신할 만한 새로운 안을 입안하여 위원장 명의로 제출하는 "위원회제출 대안"(「국회법」 §51)이 있는데, 보통 대안이라고 하면 위원회 제출 대안을 의미한다.

4) 폐기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한 결과는 "가결"(원안, 수정)과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의 어느 것으로 의결된다. 위원회는 의안의 본회의 심의에 앞서서 예비적 심사를 하는 것이므로 위원회의 의결이 그대로 국회의 의사로서 최종적인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에서 어떠한 의결을 하던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을 하였음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있다.
우리 국회는 관례상 위원회에서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된 것은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위원회에서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이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면 그 의안은 위원회의 의결과 관계없이 본회의에 부의되며 이러한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결된 법률안은 확정적으로 폐기된다(「국회법」 §87).

정부이송 …· "이송"이란 국회에서 통과된 안건을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의장이 정부에 보내는 행위를 말한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헌법 §53①, 「국회법」 §98).

공포 ……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어 오면 법제처는 법률공포안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치면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한다.

별첨 국회 일정표

10월호는 2022.9.15.부터 2022.10.14. 사이에 개최된 회의를 기준으로 제작하였습니다.

● 상임위원회 ● 소위원회 ● 국회본회의 ● 특별위원회

일자 / 위원회	15일	16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10월3일	4일	5일	6일	7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국회본회의			● 제400회 제3차	● 제400회 제4차	● 제400회 제5차	● 제400회 제6차			● 제400회 제7차	● 제400회 제8차	● 제400회 제9차											
국회운영위원회	●								●		●											
법제사법위원회						●		●														
정무위원회				●					●					●		●	●		●			●
기획재정위원회	●							●												●		
교육위원회		●			●		●										●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회				●					●					●							●	●
국방위원회			●			●								●								
행정안전위원회				●	●	●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					●				●			●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			● ●				●			●		●	●					●	●		●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	●		●						●								●
보건복지위원회			●						●					●	●					●		
환경노동위원회	●							●						●			●			●		
국토교통위원회				●	●	●	●			●	●									●		
외교통일위원회		● ●				●																
정보위원회	●									●												
여성가족위원회		●		●																		
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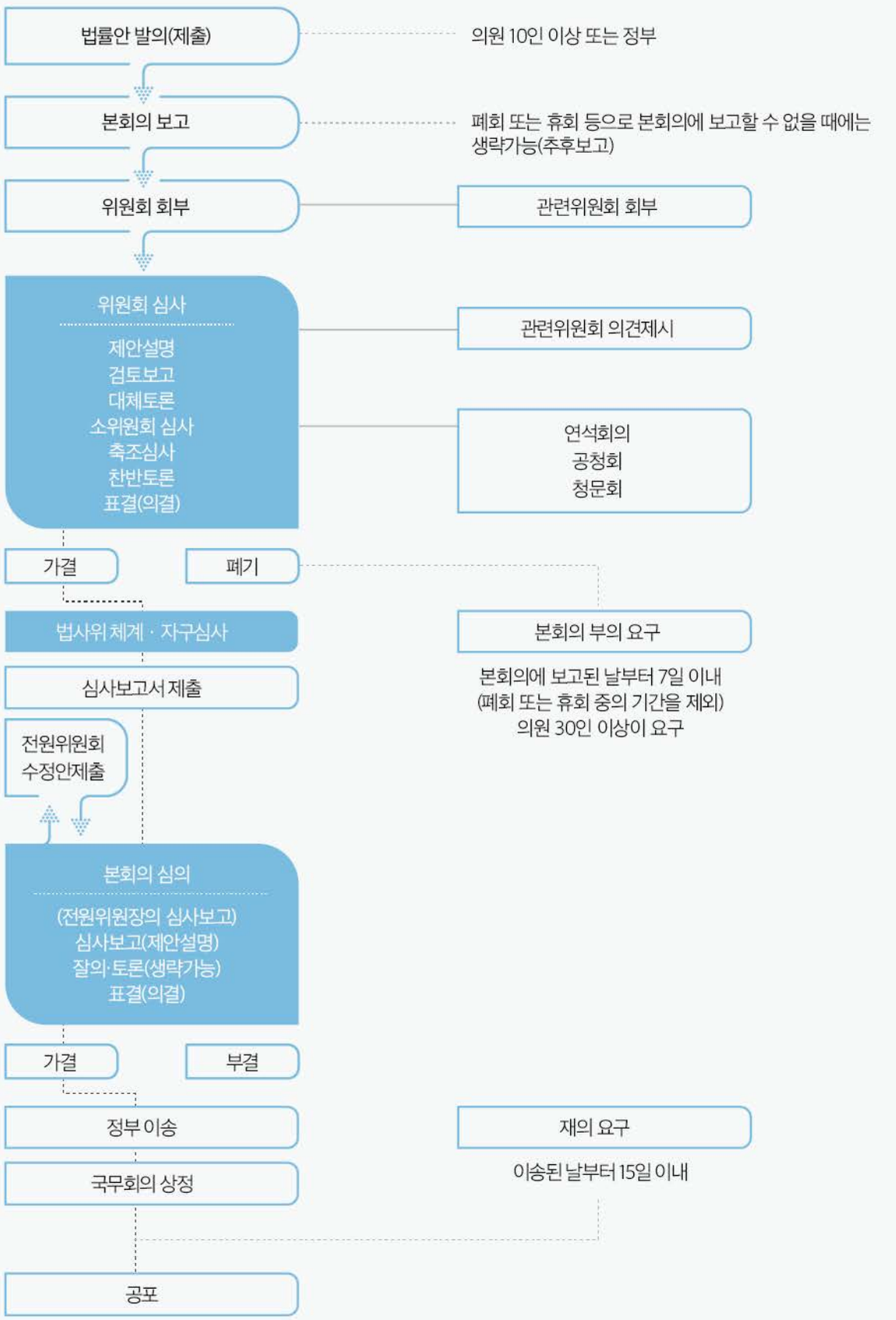


Policy & Business Report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이미지는 '국회'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국회 전경'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회, www.assembly.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안 심사절차



※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시 소관위 180일, 법사위 90일 이내 심사 완료



DAERYOOK & AJU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0615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7 동훈타워 7-16층
www.draju.com